# 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63호(2005.09.01)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38호 (2012.09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2호(2014.09.04)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중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5.02.23)를 통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년3월5일중구청장

#### 1. 결정 취지

- · 중구 남대문로4가 17-23번지 일원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
  - 도시기반시설(지하도로)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
- 2.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
  - 도시기반시설(지하도로)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   - 지하도로 결정(변경)조서

-	7 H	도면표시	시설	시설의	위 치	면 적(m²)		폭원 연장	최 초	비고		
	구분	번 호	명	세 분		기정	변경	변경후	(m)	(m)	결정일	1 <u>1</u> /
	변경	1-1	도로	지하 도로	남대문로4가 남대문시장 앞	4,063.9 (232)	감)103	3,960.9 (129)	21.2	147	1979.12.26 (서고 제528호)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면적 - 획지61 : 129㎡

<sup>※ ( )</sup>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

<sup>※</sup> 지하도로 면적은 구적면적이며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결정

# ■ 입체적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이	체적 결정 규모	모	비 고	
十七				구분	높이(m)	면적(m²)		
교 기기		지하 - 도로	남대문로4가 남대문시장 앞 (남대문로4가 71-3 일대)	지상1층	34.5~41.0 (해발고도)	33.0	지하상가로 출입하는 시설	최초결정일(2012.9.6.)
폐지	도로			지하1층	27.3~34.5 (해발고도)	103.0	지하층 연결통로	(서고 제2012-238호)

# ○ 도시기반시설(지하도로)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나대무로4 <b>7</b>	<ul> <li>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도로 면적 변경</li> <li>232㎡ → 129㎡ (감 103㎡)</li> <li>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폐지</li> <li>지상1층 34.5~41.0(해발고도) 33.0㎡</li> <li>지하1층 27.3~34.5(해발고도) 103.0㎡</li> </ul>	• 서고 제2012-238호(2012,9.6.)로 결정된 남대 문지하상가 1번 출입구(입체적 결정) 이전 및 연결통로 개설에 대하여, 지하도상가 상인연 합회에서 영업 피해등을 사유로 이전반대를 하고 있어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자 변경 결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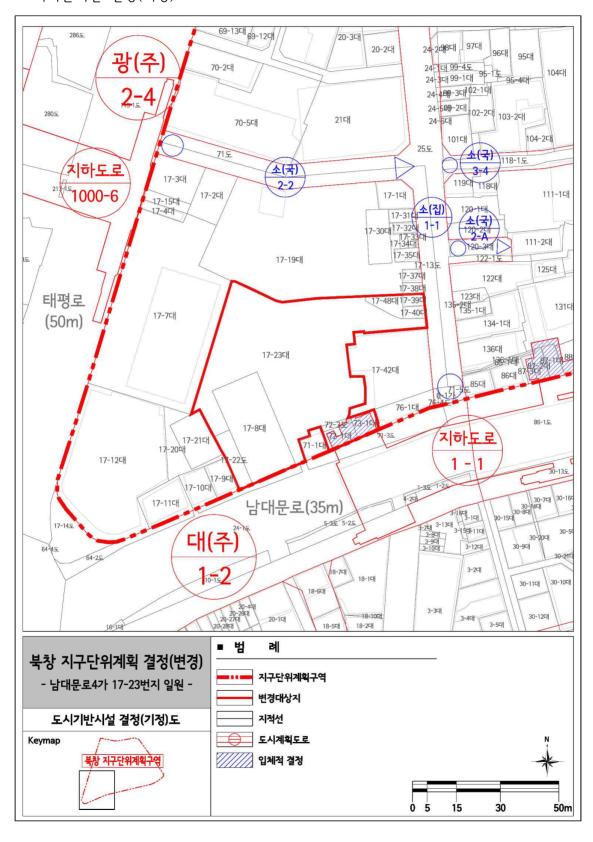
## 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8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## < 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 >

ㅁ 도시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

#### ㅁ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도

